##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곽규택

김승수 · 장동혁 · 이헌승

김종양 • 구자근 • 신동욱

정희용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 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당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 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법률 제 호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	
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의 대상으로 할 수 <u>있다</u> .	<u>있으며,</u>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
	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u>할 수 있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